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 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9. 11.
3. 회부연월일: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제31조의2(결격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제31조의2(결격사유)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제1호부터 제6호의4까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³⁾를 통해 조회(등록기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공유 허브로, 이를 통해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민원, 내부업무 처리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준지 결격사유조회,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병적증명서 조회)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는 해당 기관에 조회하고 있음.

[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별 조회방법

결격사유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기타
1	피성년후견인	○	×	
2	파산선고 후 미복권	○	×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 상실·정지	○	○	
	- 법원 판결	×	○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	○	필요시 검찰청 요청
	- 「치료감호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	필요시 법무부 요청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	병적증명서 조회
6의2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	○	필요시 검찰청 요청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집행유예 포함)	○	○	
7	징계 중 파면처분	×	×	해당기관 조회
8	징계 중 해임처분	×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확인 매뉴얼」, 2023.4.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형실효법”이라 함)」에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범죄

4) 「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자료를 민감정보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되,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에는 ‘위원’만 명시되어 있어,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에서 근거법령 미비로 반려하는⁶⁾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6) 경찰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위원 선출이 결정된 후보자에 한정’되는지, ‘후보자 전원’인지를 법무부에 질의하였고, 법무부는 ‘위원 선출이 결정된 후보자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경찰청은 법무부의 회신을 근거로, 범죄경력조회는 ‘위원 선출이 결정된 후보자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하며 협조를 요청함(「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관련 통보 및 협조 요청」(경찰청 범죄분석과-16709, 2024.7.3.)).

이에 개정안은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청하는 범죄경력조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중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조회(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각호의 내용 등에 대한 조회 및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각 호의 모든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경 이루어지므로 2025년 위원 구성에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경과에 따라 시행일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경찰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경찰청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각급 학교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후보자’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학운위 위원과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 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범죄 경력(제3호~제6호의4, 경찰청)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1·2호, 행안부), 징계로 파면·해임처분된 자(7·8호, 인혁처 등)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별 조회 기관이 다르므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자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조회 기관: (제1호·제2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3호~제6호의4) 경찰청, 행정복지센터(법령 조항 등 추가 확인 필요시 검찰청), (제7호·제8호) 인사혁신처(전직 공무원 등) 등
- 또한, 2025년 3월 학운위 선거부터 결격사유 조회 근거조항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조회 절차·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 조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운위 위원 후보자’와 ‘학운위 위원’에 대한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 일부수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에 대한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는 범죄경력조회대상자를 제1항 동별 대표자 후보자와 제2항 동별 대표자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

문 의 처

02)6788-5189